

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성수의 소셜벤처기관 및 임팩트 투자사가 집적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도시문제해결·ESG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기존의 성수IT종합센터를 2020년 7월부터 「서울창업허브 성수」로 재개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
-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서울창업허브 성수
소재지	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아크밸리
시설규모	연면적 5,492.98㎡ (지상 2~4층)
시설용도	창업지원시설(입주공간, 보육 특화공간, 공유공간 등)

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23.1.1.~2025.12.31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1,501백만원('22년 예산)

다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○ 추진경위

- 2011. 2. :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
- 2012. 10. : 제241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('13.1.~'15.7.)
- 2015. 6. : 제261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('15.7.~'17.12.)
- 2017. 11. : 제277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('18.1.~'20.12.)
- 2020. 9. :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('21.1.~'22.12.)
- 2022. 6. :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- 2022. 7. :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·의결(동의)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도시문제해결·ESG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문제해결·ESG 창업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

- 기업의 중요지표로 급부상한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 필요성이 증대함
- 이에 다양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도시문제해결·ESG 분야 창업기업 보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
 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 -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도시문제해결·ESG 분야 우수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민간 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
 -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, 관리, 홍보 및 교류·협력사업
- 임팩트 투자 및 ESG 생태계 활성화
 - 국내외 VC 및 액셀러레이터 등 협력을 통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
 - 인근 주요 창업 지원 시설과의 협력·연계 방안 추진
-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 - 안전대책 수립,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
 -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-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 7. 20.) 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정책과 동북권창업팀 이정순 (☎ 2133-4880)

서지니 (☎ 2133-4883)